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. 국민누구나 신고 할 수 있습니다.

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중
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
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
직접 운전할 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
주차가능합니다.



- * 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,
- * 주차가능 표지는 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법 주차시 **과태료 10만원.**
-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**과태료 50만원.**
(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)
-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**과태료 200만원.**
(장애인복지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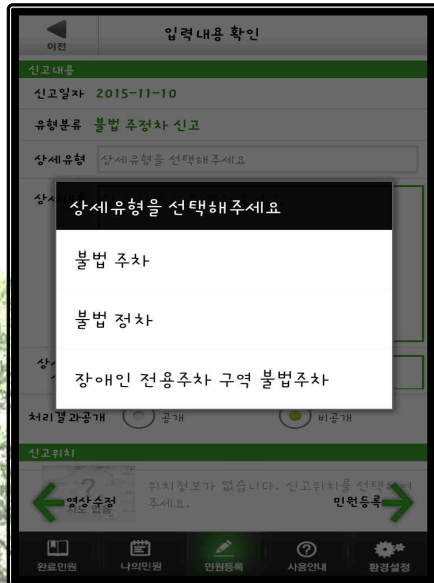
<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표지>



<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불가능한 표지>



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방법



- ① 스마트폰에 “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” 어플을 설치합니다.
 - ② “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” 앱을 실행합니다.
 - ③ 민원인 정보를 입력합니다. (최초 1회 인증)
 - ④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누릅니다.
 - ⑤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를 클릭해 촬영합니다.
 - ⑥ 내용입력을 클릭, 상세유형에서 ‘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’ 를 선택. 상세내용을 입력합니다. (신고위치 수정가능)
 - ⑦ 민원등록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.
- 나의 민원정보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